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선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139 발의연월일 : 2024. 9. 20.

발 의 자: 강선영·유용원·강대식

김대식 · 김용태 · 박준태

김종양 • 최수진 • 고동진

성일종 · 임종득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방기술품질원이 무기체계에 대한 각종 시험이나 연구활동에 필요한 시설물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「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안」에 국방기술품질원이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받는 경우 그기간을 20년 이상 장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(안 별표제76호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강선영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414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 제7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연번	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	특례유형	존속기한
76	「방위사업법」 제32조의2	사용료등의 감면, 장기 사용허가등	2029. 12. 31.
		및 양여	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